

국제저작권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포지움서 관계 전문가들 열띤 토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지난달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도고에서 '국제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소련체제의 변화와 중국과의 수교, 남북 교류협력에 따른 부속합의서의 발효 등으로 인한 국제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대비하기 위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는 저작권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출판 뿐 아니라 저작권 에이전시, 방송계, 음반협회 등의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이 심포지움에서 한승헌변호사는 '남북 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 보호방안'을, 고려대 법대 박준호교수는 '러시아·중국의 저작권제도와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관심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음에 이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실는다.

“남북저작권공동조정위원회 구성 제의”

한승헌—91년 12월13일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총리에 의해 서명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9월17일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부속합의서 2장 '사회문화 교류 협력' 중 9조에는 “남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쌍방의 합의에 따라 그 범위, 보호기간, 이용절차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북한 또는 재북자의 저작물이 남한의 국내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호된다는 종래의 다수설도 이젠 수정의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간에 저작권을 상호 보호한다” 함은 남북이 상대지역에 거주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서로 법적으로 존중 보호함을 의미하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남북이 자기측 실정법의 효력이 상대측에 미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종래 남한에서는 재북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소송의 판결에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남한법령의 북한지역 적용론이 통설처럼 인식돼 왔

으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인정하는 조약으로 볼 때에 북한지역은 남한 법령의 적용 공간 밖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남북간의 기본합의서가 국제법상의 조약인지에 대해선 두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다. 정책의 선언에 준하는 7.4남북공동성명과 달리 기본합의서가 구속력 있는 규범임에는 이론이 없지만,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점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반국가간의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제법 주체사이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므로 국제법상의 조약이며, 합의서도 국제법상 조약의 한 명칭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앞으로 남북이 저작권을 상호 보호함에는 3가지 방안이 가능한데, 첫째는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각기 자기측 국내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둘째는 남북이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권보호법제를 갖추고 동일한 다국간 저작권조약의 회원국이 되는 방안, 셋째는 남북간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담은 새로운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첫째안은 북한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갖추지 못한 형편이고, 남북간의 현행법에 따른 상호보호는 상호주의를 채택해도 구체적인 실효의 기대는 어렵다. 또한 둘째안 역시 북한이 저작권보호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다국간조약에 가입할 가망이 없어 실현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협의면에서도 실익이 큰 세번째 방안이 가능한데,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쌍방합의에 의한 조치”도 이 방안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간의 협정에 담아야 할 실체적 구체적 규정의 골자는 우선, 저작권보호의 기본용어 등은 남한저작권법의 규정을 기초안으로 하되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추가규정을 두어야 한다. 절차적 사항으로는 저작권자의 생사확인 등 이행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한데, 기존기구의 활용이 편리할 것이며, 남북 저작권분쟁을 조정 내지 중재하기 위해 '남북 저작권공동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

꾸준한 저작권 논의와 문화교류 바람직

박준호—러시아와 중국은 최근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고, 우리와는 경제·문화적 교류가 적어, 저작권분야 역시 쌍방이 확실한 정보마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러시



심의조정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이 지난달 1, 2일 충남 도고에서 개최됐다.

아나 중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변혁기에 처해 있고, 저작권만 하더라도 과거의 사회주의 전통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의 대체를 피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중심으로 거론한다.

1911년에 제정된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1917년에 있는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에 합당한 방식으로 변경된 역사를 지닌다. 먼저 1917년부터 18년까지 저작권의 국유화가 단행되었고, 25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저작권 기본규정'이 제정되었으며, 61년에는 '소련 및 연방공화국 민사법 기본규정' 제4장에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민법의 테두리에서 저작권문제를 규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반영, 91년 5월 기본규정을 전면 손질하였고, 이 규정은 잠정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새로운 법은 출판업의 사유화와 언론출판의 자유보장이란 측면에서 이해되는데, 무엇보다도 국제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전과 달리 저작권이 배타적인 것으로 명시돼 있어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특성이었던 시장성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저작권료를 지불 받던 관행도 새법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 법에는 이외에도 몇가지 특징적 사항이 삽입돼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의 예시에 추가하고, 인접권을 신설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저작권협약과 워싱턴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지만,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며, 자국의 저작권은 적극 보호하면서 타국의 저작권은 무시하는 경

향이 강하다.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90년 9월 전인민대회서 통과되어 9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각 법령에 산재한 저작권 보호규정을 단일화하고, 보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중국의 저작권법 역시 일반적인 체제에 따라 저작권을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누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대상으로 삼았으며, 국제 관행에 따라 저작자 사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신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 및 전파를 격려하여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는 조항을 두어 여타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저작권보호에 국가기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행정적 주관을 넘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몰수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중국은 92년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에 동시 가입해 협약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이미 양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저작권제도를 검토하면서 지적되는 몇가지 결론은, 먼저 특징적 제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행조치에 있어서도 국제적 유대가 깊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 국가와의 저작권교류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꾸준한 저작권 논의가 있어야 한다.

—최태원 기자